

의안번호	2205242
의 퇴 인	김종양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4.
추 계 번호	24D4815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6억 6,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439억 9,200만원(연평균 146억 6,4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합 계	연평균
창원시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기간 연장 (안 제53조)	14,664	14,664	14,664	43,992	14,664

주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3조(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)	-통합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남도 창원시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을 3년 연장 :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지원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까지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3조(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법¹⁾상 추가 재정지원을 받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남도 창원시(2025년 12월 31일까지)와 충청북도 청주시(2029년 12월 31일까지)임
-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법상 창원시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은 2025년까지이므로 2026년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창원시의 연도별 추가 지원액을 합하여 산출
- 현행법상 창원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매년 146억 6,400만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받음
 - 창원시의 경우 2010년 마산시·창원시·진해시가 통합되었으며, 당초 추가 재정지원 기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마산시·창원시·진해시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인 146억 6,400만원을 매년 재정지원 받음. 2020년 12월 동 법 개정으로 5년 연장되어 2021년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, 2022년에는 100분의 5, 2023년에는 100분의 4, 2024년에는 100분의 2, 2025년에는 100분의 1의 추가 재정지원을 받음
- 개정안에 따라 창원시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경우, 창원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46억 6,400만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됨

1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3조(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) 국가는 「지방교부세법」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(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,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)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7.4.>

[표 2] 창원시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액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통합 직전연도 교부세 합계액(A)	지원비율(B)	지원액 (C=A×B)
경상남도 창원시	244,400	6%	14,664

4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6억 6,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439억 9,200만원(연평균 146억 6,4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2026	2027	2028	합 계	연평균
14,664	14,664	14,664	43,992	14,66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